

2023. 9. 19.(화)
보도시점 브리핑 시작(14시30분) 이후 배포 2023. 9. 19.(화)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요약본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 ('18년 빈곤갭) 우리나라 34.2%, OECD 평균 30.2%

○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

○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 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 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A씨는 월 62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이며, 생계비가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식사준비와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
↓
- ▲ (개선)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집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막막한 상황
↓
- ▲ (개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B씨도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

-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24)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 공사비 재계측 등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고려

-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기준	변동	기준	변동	기준	변동	기준	변동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C씨는 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경험
- ↓
- ▲ (개선) C씨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며,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4종 추가로 설치

-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

(단위: 만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 (B)	B/A	'22 (C)	C/A	'23 (D)	D/A	'24 (E)	E/A
초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중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고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학부모 D씨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나, 현재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어려움

↓

- ▲ (개선) '24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인 초등 46만1천원, 중등 65만4천원으로 인상되어 총 111만5천원 수급,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등록 중증장애인인 E씨 가구(2인)의 월 소득은 12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F씨의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

↓

- ▲ (개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24년부터 아버지 F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E씨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

- 생계급여의 경우 '21.10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외규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완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에 대하여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23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중이나,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133만원) 생계급여 탈락
↓
- ▲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J씨는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유하고 있는 카니발(2011년식, 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726만원) 생계급여 탈락
↓
- ▲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51만원으로 감소, 약 63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또한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1,600cc 미만)을 완화하고, ▲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현행	개선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일반자동차 중 월 4.17% 적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 (예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등
일반자동차 소득환산율	▲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

-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48%' 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까지 상향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임대주택(임대료 월 2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가구 K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220만원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208만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
- ▲ (개선)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되어(3인 가구 월 226만원) K씨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가능

-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

* (생계지원금 인상) (1인) ('23) 623,300원 → ('24) 713,100원, (4인) ('23) 1,620,200원 → ('24) 1,833,500원

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 (근로유인 강화)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 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27세 L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 공제를 30%를 적용하더라도 '23년 1인가구 선정기준 62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
↓
- ▲ (개선) '24년부터 30세 미만 청년까지 근로소득 추가공제(4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소득 인정액이 56만원으로 감소, 약 15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또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 를 시범 운영한다.

* 참여자의 정서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21년 개발, ①자활의지(자존감, 동기, 기술, 목표), ②근로장벽, ③자활행동(일상생활, 근로, 사회적 관계 등) 영역으로 구성

-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성숙단계 등 단계별로 자활기업 창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24세 조건부 수급자 M씨는 지속된 빈곤으로 의욕이 낮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자활역량이 높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었으나 취업에 실패
- ↓
- ▲ (개선) 신규 구축된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신용회복서비스 및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되었으며, 청년자립지원 사업단을 통해 자활기업에서 인턴근무 가능

-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 확대하여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한다.
- 참여자 수요과제 발굴 및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 자산형성포털을 활성화하고, 패널 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체감도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 (현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N씨는 만기수령금 재투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 하고 평소 금융·자산 교육에 관심이 많으나, 학업·근로 병행으로 해당 분야 학습을 주저하고 있으며 학습과 관련된 정보도 부족한 상황
- ↓
- ▲ (개선) '25년부터 자산형성포털을 활용해 청년층 수요가 많은 맞춤형 금융, 자산 교육 등 양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재무상담도 가능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 (제도 관리 내실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 (현행) 중증·희귀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질환 400+90+55일

- 실제 진료비 지출 및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수준을 현실화하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음에도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급자의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현 정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우리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 라면서,

-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정준섭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윤석범 (044-202-3054)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전하늬 (044-202-3073)
			사무관 김지혁 (044-202-3072)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3090)
		담당자	사무관 신형원 (044-202-3094)
			사무관 박정현 (044-202-3091)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김진호 (044-201-3358)
<교육급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521)
		담당자	사무관 황혜경 (044-203-6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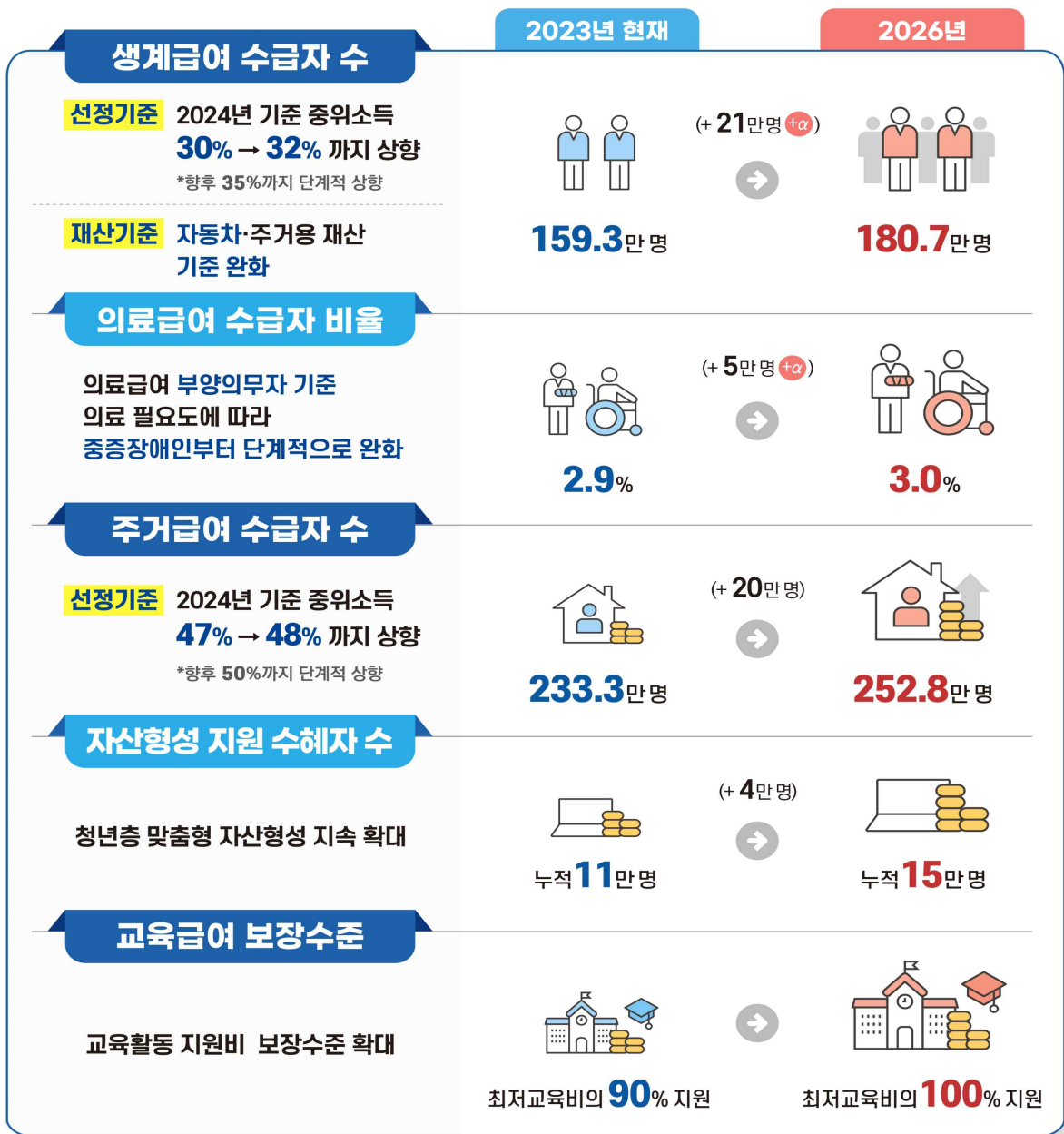


- <붙임> 1.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2. 수혜 대상별 달라지는 점
3. 제3차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5. 제3차 종합계획 추진을 통한 개선 사례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 <별첨>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요약본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보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 통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3급지/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24년 4급지/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청 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4세 이하

30세 미만

2023년

2024년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40만 원

60만 원

2023년

2024년

장애인·어르신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

228개 시·군·구
연간 2천 3백 명



2023년



2026년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2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월 100%

월 4.17%

2023년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 '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 ₩ '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 '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30%→35%)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17년 이후 최초)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금지 개편(3금지→4금지) 및 공제액 상향조정
(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47%→50%)

-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24세 이하→30세 미만)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15만 명(누적)으로 증가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최저교육비의 100%)

-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붙임 4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현행	개선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p>▲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p>	<p>▲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p>
	<p>※ 개선 사례</p> <p>▲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J씨는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유하고 있는 카니발(2011년식, 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 인정액 726만원) 생계급여 탈락</p> <p style="text-align: center;">↓</p> <p>▲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51만원으로 감소, 약 63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p>	
생업용 자동차	<p>▲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p>	<p>▲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p>
	<p>※ 개선 사례</p> <p>▲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I씨의 SM5(1,998cc, 1,000만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133만원) 생계급여 탈락</p> <p style="text-align: center;">↓</p> <p>▲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원으로 감소,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p>	
일반자동차 중 월 4.17% 적용 자동차	<p>▲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p>	<p>▲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 (예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등</p>
일반자동차 소득환산율	<p>▲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p>	<p>▲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p>

1**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30%→32%****< 현재 >**

- 서울시 쪽방촌에 사는 62세 A씨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은 봉사단체에서 해결, 나머지 끼니는 라면과, 편의점 도시락 등으로 챙겨 먹는다. 최근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마트에 가도 물건을 들었다 놔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실한 식사로 앓고 있던 당뇨가 더 심해져 가끔씩 나가던 일용직도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월 62만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인 A씨는 생계비가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식사준비와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선 사례 >

- '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1인 가구 기준 7.25%)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으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71만원(14.40% ↑) 까지 인상되어 월 9만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2**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현재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B씨는 1년 전 집에서 생활하던 중 부상을 당해 요양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 생활에 지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1인 가구여서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B씨는 매끼 식사를 챙기는 것부터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 개선 사례 >

- '23년까지 7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B씨도 퇴원하여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최대 2년)

3

주거급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현재 >

-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C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 많다. 주택이 저지대에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서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선 사례 >

- C씨 주택은 정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 가능
- 이에 따라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4종)인 ‘차수판(침수방지 및 침수시간 지연), ‘개폐 가능한 방범용방충망(대피경로 확보), ‘침수경보장치(골든타임 확보), ‘세대 역류방지장치(침수방지 및 시간지연)를 추가로 설치 받게 되며, C씨는 주거의 편의성은 물론 침수위험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현재 >

- 학부모 D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다. 그동안 교육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와 디지털화하는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현재의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기 어려워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 개선 사례 >

- '24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초등학생 461천원, 중학생 654천원 등 총 1,115천원 수급 가능
- 이에 따라 그간 비싸서 사주지 못했던 참고서도 구입하고, 자녀가 희망하는 요리학원도 보내주는 등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

< 현재 >

- 등록 중증장애인인 E씨는 형과 함께 살고 있으며,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형의 월 소득 12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E씨 가구의 소득조건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버지 F씨의 월 소득이 29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E씨는 중증장애로 인한 의료비와 보험료 등으로 연 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 개선 사례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라 E씨의 아버지 F씨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증장애인 E씨는 '24년부터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가능하며 보험료 없이 연 24만원만 의료비로 부담

* ('24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인 경우 미지원)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 현재 >

- 서울에 사는 노인 G씨는 얼마 전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G씨의 부양의무자인 자녀 H씨(4인 가구)가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공제액이 10년째 동결 상태이지만, H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매년 올라 10년 전 2억 3천만원이던 것이 올해 4억원이 넘게 됐다. 부양의무자 H씨는 유일하게 소유한 재산 가격 상승만으로 부양능력 있음 판정을 받게 됐고, 이 때문에 G씨는 의료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 개선 사례 >

- '23년 현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3급지 체계로 서울 지역은 2억 2천 8백만원 공제되나, '24년부터는 4급지 체계로 개편되며 서울 기준 3억 6천 4백만원 공제됨. 부양의무자 H씨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 공제 금액이 커져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G씨는 의료급여 수급 가능

6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 가구

< 현재 >

- 서울시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임차보증금 9천만원)로 거주 중인 43세 I씨는 아내와 자녀 3명(11세, 9세, 5세)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이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 중이며, I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원을 초과하여 탈락했다.

* 근로.사업소득 기본 30% 공제, 주거용재산은 서울시 기본재산액 9,900만원 이내로 전액 공제

< 개선 사례 >

- '24년부터 변경되는 다인·다자녀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00cc→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

현행	개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기준) 다인·다자녀가구의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이에 따라 I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에서 151만원으로 감소하여, 약 63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24년 5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 214만원 - 151만원 = 63만원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급여 수급]
현재	126만원	+ (600만원 × 100%)	= 726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개선	126만원	+ (600만원 × 4.17%)	= 151만원	⇒ 생계(63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 근로.사업소득 기본 30% 공제, 주거용재산은 서울시 기본재산액 9,900만원 이내로 전액 공제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생업용 자동차**

< 현재 >

- 경기도에서 아파트에 전세(임차보증금 7.7천만원)로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아내는 가끔씩 동네 비닐하우스 일을 돕고 일당을 받고 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전기기술자인 J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달에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 1,000만원) 차량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 근로.사업소득은 기본 30% 공제, 주거용재산은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 이내로 전액 공제
 * '23년 현재 생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 개선 사례 >

- '24년부터 변경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

현행	⇒	개선
(생업용 적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의 50%만 재산 산정		(생업용 적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이에 따라 J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33만원에서 133만원으로 감소하여, 약 5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24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 183만원 - 133만원 = 50만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급여 수급]
현재	133만원		(1,000만원 × 100%)		1,133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개선	133만원		(1,000만원 × 0%)		133만원		생계(50만원),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 근로.사업소득은 기본 30% 공제, 주거용재산은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 이내로 전액 공제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현재 >

- 경기도 화성에서 아내, 딸과 함께 임대주택(임대료 월 2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 K씨(41세)는 소득인정액이 '23년 기준 약 220만원으로, 현재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2,084,364원을 초과하여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씨는 최근 물가상승과 월세 상승 등으로 정부 차원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근소한 소득인정액 차이로(약 12만원) 급여 대상자에 제외되고 있어, 얼마 안되는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 개선 사례 >

- '24년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23년 대비 1%p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47%→48%)하여 선정기준이 2,263,035원이 되고, K씨는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 및 실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20만원)를 지원받게 됨
 - * '24년 기준(3인가구, 경기·인천) 소득인정액 및 지원상한: 48%, 2,263,035원 / 35.8만원
 - *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되는 경우, 2,357,328만원까지 확대

8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청년 대상연령 확대)

< 현재 >

- 27세 L씨는 1인 가구로 서울시의 한 원룸(월세 50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이다. 최근 아버지께서 위암 판정을 받아 병원비 부담 때문에 당장 편의점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하나 고민이다. L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기본 30%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23년 1인 가구 선정기준 62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 * 주거용재산은 서울시 기본재산액 9,900만원 이내로 전액 공제
 - * '23년 현재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4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개선 사례 >

- '24년부터 변경되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경우 30세 미만의 청년까지 근로소득 추가공제(40만원 공제+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혜택을 받게되므로 소득 인정액이 56만원으로 감소, 약 15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
 - * '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71만원 - 56만원 = 15만원

9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 현재 >

- 24세 조건부 수급자 M씨는 1인 가구로,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빈곤으로 인해 의욕이 낮고 생활고로 인한 부채로 신용불량 상태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역량이 높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었으나, 취업에 실패하였다.

< 개선 사례 >

- 자활근로 배치 후 신규로 구축된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그간 교육 및 취·창업 준비 이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신용회복서비스 및 주거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됨
- 자활복지연수원 교육을 통해 전문 기능 자격을 취득하고 청년자립지원 사업단을 통해 자활기업에서 인턴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부채를 청산하고 취업하여 탈수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자산형성 지원 확대

< 현재 >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N씨는 만기수령금 재투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평소에 금융, 자산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학업과 근로의 병행으로 인한 시·공간적 제약으로 해당 분야 학습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교육을 받는다면, 어디서부터 어떤 과목부터 학습해야 하는지 정보도 부족해 막막한 실정이다.

< 개선 사례 >

- '25.1월부터 개선된 자산형성포털을 활용해 청년들 수요가 많은 맞춤형 금융, 자산, 심리, 정서안정 교육 등 양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재무상담(취창업, 1대1 자산형성 멘토링 등)도 가능하게 됨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종

-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8조 원(국비 기준)

* 생계 6조 원, 의료 9.1조 원, 주거 25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7조 원, 해산장제 332억 원

- (수급자 현황) '23.6월말 기준 252만 명(생계 159만, 의료 144만, 주거 233만, 교육 30만)

붙임 7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반, 생계급여 〉

□ 상대적 빈곤율

-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60% 등)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하는 제도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 (소득평가액)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등을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율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재산 월 100% 적용

□ 생계·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층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 비수급 빈곤층 포함
 - 차상위 장애인(장애(아동)수당·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확인사업으로 구성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
 - 기존에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했으나, '15.7월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에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활용

□ 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포함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시·도 또는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급여의 결정, 연간조사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사업 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사업 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는 것
 -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 증가

< 의료급여 >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이하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 지원하는 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비급여 및 상한제 적용 제외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연장승인제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시군구)이 의료급여 연장 필요성을 심의해 필요시 승인하는 제도

* 중증·희귀난치성질환 365+90일(1회 연장 가능), 만성고시질환 380+75일(1회 연장 가능), 기타질환 400+90+55일(2회 연장 가능)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는 제도(조건부 연장 승인)*

* 단, 특정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및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급여일수 초과 전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 가능(자발적 참여)

□ 부양비 부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액(부양비)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소득액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차감한 금액의 30% 또는 15%를 부과(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

□ 건강생활유지비

-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투약 포함)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연 7만 2천원)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의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주거급여 >

□ 최저주거기준

-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 구조, 성능, 환경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주거면적기준) 1인: 14㎡ / 2인: 26㎡ / 3인: 36㎡ / 4인: 43㎡ 등

□ 기준임대료

-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의 주택임차료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 지원 중

< '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원/월) >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수선유지급여 수선한도

-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침수방지시설 지원

- 주택조사 시 지하층 거주 여부 및 침수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수선공사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 교육급여 >

최저교육비

-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 제공'이라는 교육급여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을 기존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

< 자활급여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조건불이행 시 본인의 생계급여 삭감

자활기업

- 자활근로참여자가 독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1/3 이상(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일 때 자활기업으로 인정

자활인프라

- 자활근로·자산형성 지원사업·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교육상담 등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1개소), 광역자활센터(16개소), 지역자활센터(250개소) 운영 중

자산형성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교육·주거·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